

서울특별시

우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731-6391-4/ 전송 731-6795

문서번호 주계 58533 *1624b*
 시행일자 1994. 9. 7.
 (경유)
 수신 내부결재
 참조

취급		시 장
보존		양정
주택국장	전결	
주택계량과장	<i>Shin</i>	
계량2계장	<i>정</i>	
기안	정순구	법무담당관 심사필 (고시안심사)
		<div style="display: inline-block; border: 1px solid black; border-radius: 50%; padding: 5px;">결재</div> <div style="display: inline-block; border: 1px solid black; border-radius: 50%; padding: 5px; margin-left: 20px;">94. 9. 7</div> <div style="display: inline-block; border: 1px solid black; border-radius: 50%; padding: 5px; margin-left: 20px;">합조</div>

제목 장충제1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(단순면적정정) 및 고시

1. 건설부고시 제93-216호(93.6.18)로 지구지정된 장충제1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관할 중구청장으로 부터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과정에서 당초 지정된 면적착오가 발견되어 지구제 변경이 없는 단순면적응 위한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 요청이 있어 내용검토 한 바

2.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입시조치법 제3조(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)와 같은법시행령제3조(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신청등) 및 제12조(권한의 위임)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밑첨 고시(안)과 같이 고시하고자 하오니 재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첨부 1. 고시(안) 1부
 2. 지구지정도면 1부. 끝.

(제 2 안)

수신 총무처장관

제목 관보게제의회

1. 아래와 같이 관보게제의회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계제구분 : 고시

나. 계제건명 : 장충제1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

다. 법적근거 :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조치법 제3조 .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2항 및 제12조제1호

- 첨부 1. 고서문 사본2부. 끝.

서울특별시장

(제 3 안)

수신 건설부장관

참조 주택개발과장

제목 장충제1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 보고

1. 건설부고시 제93-216호(93.6.18)로 지구지정된 장충제1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와 동법시행령 제3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(단순면적 정정) 및 고시하였기 보고합니다.

첨부 1. 고시문 사본 1부.

2. 지구지정도면 1부. 끝.

서울특별시장

(제 4 안)

수신 중구청장

참조 주택과장

제목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 통보

1. 주택58531 - 1078호(94.6.23)와 관련입니다.

2. 위호와 관련 귀구 장충제1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 신청건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 및 고시하였기 통보하니 관계도서 사본을 구청관련부서및 해당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개선계획수립등 사업 추진에 착오 없도록 하기바람.

첨부 1. 고시문 사본1부.

2. 지구변경지정도면 각1부. 끝.

서울특별시장

(제 5 안)

수신 수신처 참조

제목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통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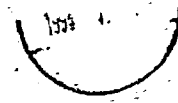
1. 건설부고시 제93-216호(93.6.18)로 지구정된 장충제1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변경지정 하 였기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 1. 고시문 사본 1부.

2. 변경지정도면 1부. 끝.

주 택 개 량 과 장

수신처 : 도시계획과장. 시설계획과장.



고 시 (안)

서울특별시고시 제1994 220 호

일자	1994. 7. 5	
담당자	[인]	
	[인]	[인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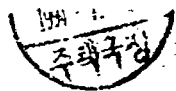
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

1. 건설부고시 제93-216호(93.6.18)로 지구지정된 장충제1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지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 사본을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개량과와 중구 주택과, 도시정비과 및 해당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94년 7월 일

서울특별시장

가.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 조서



지구명	위치	면적 (㎡)			비고
		기정	변경	증. 감	
장충제1	중구 장충동 2가 193번지일대	22,720.8	22,613.2	감107.6	단순면적정정

나. 관계도서 :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개량과와 중구 주택과, 도시정비과 및 해당동사무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습니다.

강릉 제1주거환경개선계획도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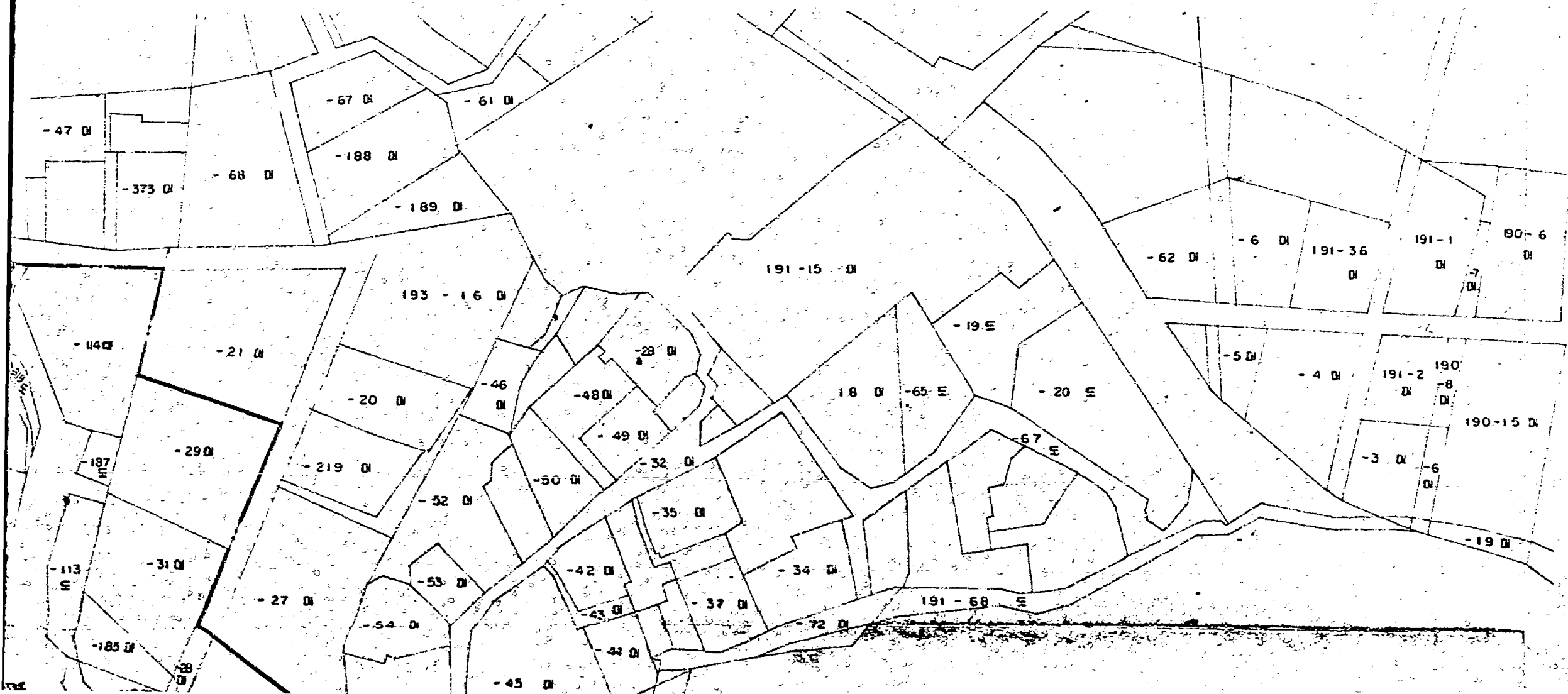


151B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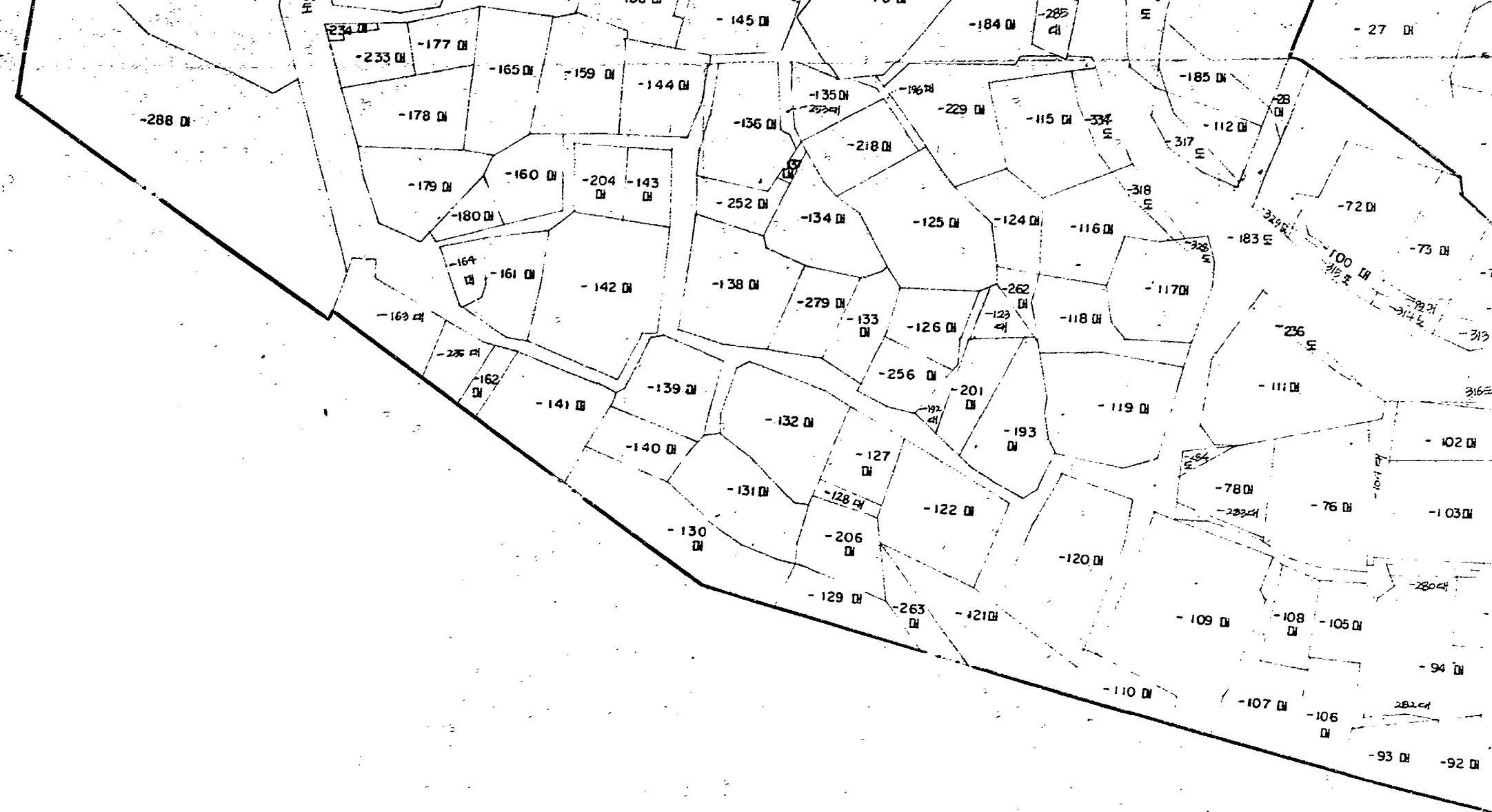
환경개선지구 계획도

S=1:60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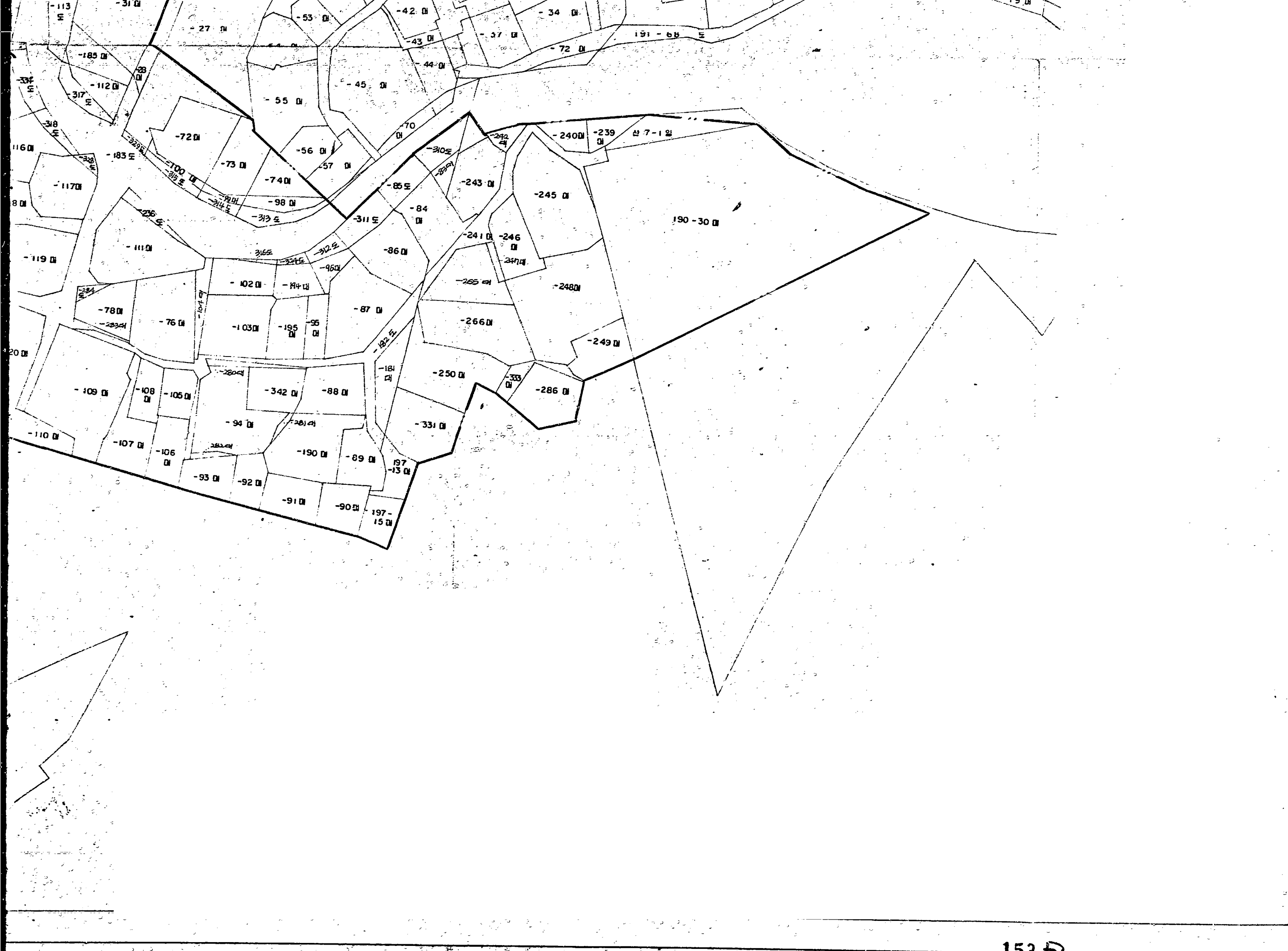
S=1:600



장
중
|
지
구
주
거
환경
개선



개
선
사
업
지
적
종
합
도



1994. 7. 21
주최국장

서울특별시 고시 제'94-2217호
1994년 7월 일